

##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

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2. 29

관 세 청 장

할당관세품목	상세품명 및 규격	세번부호(HSK)	적용기간
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(닭의 것)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)	0207.12-0000	2024.1.1. ~ 2024.3.31.
	절단육(냉동한 것) 다리	0207.14-101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가슴	0207.14-1020	
	절단육(냉동한 것) 날개	0207.14-1030	
	절단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1090	
	설육(냉동한 것) 기타	0207.14-2090	
닭으로 만든 것	조제·보존처리한 닭 (삼계탕 이외의 것)	1602.32-1090 1602.32-9000	
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(닭의 것)	알의 노른자위(건조한 것)	0408.11-0000	
	알의 노른자위(기타)	0408.19-0000	
	기타 알(건조한 것)	0408.91-0000	
	기타 알(닭의 것)	0408.99-1000	
알부민	알의 흰자위(건조한 것) * 식품 원료용의 것	3502.11-0000	
	알의 흰자위(기타) *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 동한 상태의 것	3502.19-0000	
매니옥 칩	건조한 것(주정용)	0714.10-2010	
커피 (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	0901.11-0000	2024.1.1. ~ 2024.6.30.
	카페인을 제거한 것	0901.12-0000	
해바라기씨유	조유	1512.11-1000	
	기타 정제유	1512.19-1010	
사탕수수당	사탕무당 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2-1000	
	사탕무당 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2-2000	

	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	1701.13-0000	
	그 밖의 사탕수수당 (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)	1701.14-1000	
	그 밖의 사탕수수당 (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하는 것)	1701.14-2000	
	기타 (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)	1701.91-0000	
	기타(기타)	1701.99-0000	
땅콩	피넛버터를 제외하며, 가공용 으로 한정한다	2008.11-9000	
석유	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,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 되는 원유	2709.00	
역청유			
석유가스	액화 천연가스	2711.11-0000	
	액화 프로판	2711.12-0000	
	액화 부탄	2711.13-0000	
	천연가스	2711.21-0000	
비료	인산이암모늄	3105.30-0000	
옥수수	기타(가공용)	1005.90-9000	
대두	채유용과 탈지대두박용	1201.90-1000	
희귀가스	네온	2804.29-2000	
	크립톤	2804.29-3000	
	크세논	2804.29-4000	
요소	기타 (산업용 등)	3102.10-9000	
전분	감자로 만든 것(식품용)	1108.13-0000	
그 밖의 변성전분 (덱스트린과 가 용성 전분을 제 외한다) * 식품용	배소전분	3505.10-3000	2024.1.1. ~ 2024.12.31.
	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	3505.10-4010	
	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	3505.10-5010	
	기타 변성전분	3505.10-9010	
글루 * 식품용	전분 글루	3505.20-1000	
	덱스트린 글루	3505.20-2000	
	기타 글루	3505.20-9000	

끝.